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31
----------	-----

2022년 11월 2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2년 11월 21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 유연식 본부장)

- 가. 제안이유
-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정부(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운영에 따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용도를 추가하고자 함. 또한 조례가 인용하는 법령의 폐지 및 신규법령(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기금 존속 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기금 명칭 변경(안 제명, 제1조, 제3조, 제8조).

- 기금 용도 추가 및 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2. 9. 8. ~ 9. 28.)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기금 존속기한 만료(~'22.12.31.)에 따라 이를 5년 연장하고, 정부(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기금 신설('22.1.1.)에 맞춰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용도를 추가하며, 조례가 인용하는 법령의 폐지와 신규 법령(「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존속기한 연장

- 안 제3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의 '22년 12월 31일에서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며, 이는 현행 조례 제3조의2에서 존속기한이 지나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다만, 존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안전을 제출하는 행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존속기한 연장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7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기금 명칭 변경 및 상위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안 제명과 제1조, 제3조 및 제8조 등은 기금 명칭을 상위법과 통일하기 위해 ‘기후변화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제1항¹⁾에 따라 정부(기획재정부)가 '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따른 것임.

안 제1조는 근거 법령을 기존의 「지방자치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안 제2조제1호, 제3호, 제5호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및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용어를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정하려는 것으로,

기금 명칭 변경과 상위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안 제2조제3호의 내용 중 가스상 물질의 화학식들은 국제 표준²⁾에 맞게 표기할 필요가 있음.

3) 기금 용도 추가

- 안 제5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일자리 전환·창출, 인력 양성, 융자·투자, 교육·홍보, 국제협력, 차입금 상환 등의 용도를 현행 조례 제5조에 추가한 것이나,

현행 조례는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추가된 내용은 상위법의 폭넓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이 필요할 것임.

1)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략)

2)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_s), 과불화탄소(PFC_s), 육불화황(SF₆)

<안 제5조의 주요 수정안 예시>

개정안	수정안
<p>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1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 사용기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용자지원 1의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시설 개보수 및 신규건설 2.~8. (생략)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 10.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12.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용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17.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8.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9.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2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 설치·교체 4.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 5.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용자·지원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보수 및 신규 건설 7.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용자(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8.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 교체비 용자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 10.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1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2.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1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안 제5조에는 폭넓고 선언적인 내용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31
----------	-----------

제안년월일: 2022년 11월 21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5조에는 폭넓고 선언적인 내용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화학식을 국제 표준에 맞게 수정함(안 제2조제3호).
- 조문 내용을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함(안 제5조).
- **안** 제5조의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용자·보조 대상 및 절차를 수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육불화황(SF6)”을 “육불화황(SF₆)”으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 설치·교체
4.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
5.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용자·지원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보수 및 신규 건설
7.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용자(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8.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 교체비 용자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
10.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1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2.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1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용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2호의 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연구·조사·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5조제3호의 사업: 10%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5조제4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만, 마목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가.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 나.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 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라.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 마.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바.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지원

사. 신·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

아.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 지원

차. 빈곤층 에너지 지원

4. 제5조제5호의 사업: 5% 이상의 공기조화기 냉매가스 직접 배출 감축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축설비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5. 제5조제6호의 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아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 제5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기금을 용자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한다.

③ 제5조제9호에 따라 기금을 용자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한다.

④ 제5조제12호에 따라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용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서울특별시</u> <u>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u> <u>운용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u> <u>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u> <u>운용에 관한 조례</u>	(개정안과 같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실 가스 저감, 신·재생에너 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u>기후변화</u> <u>기금</u> 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u>기후대응기</u> <u>금</u>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기상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2. (생략) 3. “온실가스”란 이산화탄 소(CO ₂), 메탄(CH ₄), 아산화질소(N ₂ O), 수 소불화탄소(HFCs), 과 불화탄소(PFCs), 육불 화황 및 그 밖에 「저	제2조(정의) ----- ----- ----- 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 -----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 ----- ----- ----- -----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4. (생략)

5.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6. ~ 7. (생략)

제2장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

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6. ~ 7. (현행과 같음)

제2장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

육불화황(SF6)

4. ~ 7. (개정안과 같음)

제2장 (개정안과 같음)

제3조 (개정안과 같음)

보호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
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
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
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10.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기후
대응기금-----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7년
12월 31일-----.

-----.

제5조(기금의 용도) -----

-----.

1. ~ 10. (현행과 같음)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
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
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
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12.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
여 필요한 용자·투자

제3조의2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
호까지의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
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조
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 설치·교체

4.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보급 장려 및 빈곤
층 에너지 지원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11. ~ 13. (생 략)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
용 지원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
제협력

17.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8. ~ 20. (현행 제11호부
터 제13호까지와 같음)

5. 「대기환경보전법」 제
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
기기의 냉매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용자·지원

6.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보수 및 신규 건설

7. 「도시가스사업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
급시설 설치비 용자(도시
가스 미공급지역 내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8.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 교체비 용자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

10.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1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2.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용
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1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 제5조제12호에 따라 이
차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
는 자는 기금의 운영·관
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

제6조(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제5조제19호-----

제6조(용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
라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2호의 사업: 에
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

으로 한다.

⑤ (생략)

-----.

⑤ (현행과 같음)

가스 감축에 관한 연구·조사·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5조제3호의 사업: 10%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5조제4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만, 마목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가.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나.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라.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마.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바.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지원

사. 신·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

아.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 지원

차. 빈곤층 에너지 지원

4. 제5조제5호의 사업: 5% 이상의 공기조화기 냉매가스 직접 배출 감축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축설비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5. 제5조제6호의 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아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 제5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한다.

③ 제5조제9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한다.

④ 제5조제12호에 따라 이 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의 설치 및 구성</u></p> <p>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u>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 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의 설치 및 구성</u></p> <p>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 ----- ----- <u>기 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 회</u>-----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⑤ <u>그 밖에 용자 또는 보 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u></p> <p>제3장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 (개정안과 같음)</p>
--	--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기후변화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상법」 제2조제7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로 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서울특별시 기후 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후변화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 설치·교체
4.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
5.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용자·지원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보수 및 신규 건설
7.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용자(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8.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 교체비 용자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10.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1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2.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1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융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2호의 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연구·조사·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5조제3호의 사업: 10%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5조제4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만, 마목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가.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 나.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 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라.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 마.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바.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지원
 - 사. 신·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
 - 아.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 지원

차. 빈곤층 에너지 지원

4. 제5조제5호의 사업: 5% 이상의 공기조화기 냉매가스 직접 배출 감축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축설비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5. 제5조제6호의 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아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 제5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한다.

③ 제5조제9호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한다.

④ 제5조제12호에 따라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융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후대응기금-----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변화”란 「기상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2. (생략) 3.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 및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4. (생략) 5.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 2. (현행과 같음)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6. ~ 7. (생략)

제2장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13. (생략)

-----.

6. ~ 7. (현행과 같음)

제2장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 -----

----- 기후대응기금-----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2027년 12월 31일-----

-----.

제5조(기금의 용도) -----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시설 및 기자재 설치·교체

4.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

5.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용자·지원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보수 및 신규 건설

7.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용자(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8.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 교체비 용자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

10.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1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2.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1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 ⑤ (생략)

제6조(용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2호의 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연구·조사·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5조제3호의 사업: 10% 이상의 에

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5조제4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만, 마목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가.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나.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라.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마.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바.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지원

사. 신·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

아.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 지원

차. 빈곤층 에너지 지원

4. 제5조제5호의 사업: 5% 이상의 공기조화기 냉매가스 직접 배출 감축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축설비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5. 제5조제6호의 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아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 제5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기금을

용자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한다.

③ 제5조제9호에 따라 기금을 용자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한다.

④ 제5조제12호에 따라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용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제3장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
-----.

1. ~ 4. (현행과 같음)